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추후 과제★

김 서 안*

요 약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Meanings and Tasks of the Three Revised Bills which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Kim Seo-An*

ABSTRACT

In January 2020,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ions of three bills which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vised laws include the launch of an independent supervisory body, the arrangement of redundant regulations, and reg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ata economy.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 and meaning of each law of the Three Revised Bills that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future challenges outline three aspect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ensur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f privacy concerns, the establishment of a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presentation of reasonable guidelines, and the expectation of professional performance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Key words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Privacy, Security, Data Economy

접수일(2020년 6월 1일), 수정일(1차: 2020년 6월 12일),
계재확정일(2020년 6월 22일)

★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
원의 대학ICT연구센터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
었음(IITP-2020-2018-0-01799)

*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주저자)

1. 서 론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른바 데이터 3법,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이 법률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을 강조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 활용이 불가하고 4차 산업 등 신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법은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제 시대의 포문을 열게 되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 분야에는 투자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반하여 법 제도의 정비가 미진한 상태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대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되었다[14]. 이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의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가지며,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10, 15]. 최근에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69.6%로 높게 나타났고 기술개발과 신산업 육성에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2%였다[10]. 이에 비추어볼 때 새로운 경제 발전의 혁신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데이터 오·남용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발생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개인정보를 가명 또는 익명처리를 할 경우에도 여전히 그 주체를 식별할 우려가 있고, 특히 유전자 정보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에 가명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5]. 데이터 3법의 개정의 의미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보안(Security)의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이다[18]. 이에 본 논문

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추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그 의미

2.1 개인정보 보호법

2.1.1 개정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은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정립을 위하여 개정이 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명정보의 활용을 도입하였다[13]. 또한 정보보호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 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출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유사·중복 규정되었던 조항들을 정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다[13].

2.1.2 개인정보 개념의 체계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그 정의가 불명확하고, 실제 판결 시에는 동법률상의 개념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3, 8]. 이에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하여 ‘다른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비용, 시간,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또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과 결합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포섭하였다. 그리고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과학적 연구”라는 정의도 신설하였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8호).

2.1.3 가명정보의 활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1항 제4호에서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형태로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11]. 이번 개정법을 통하여 가명정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경우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과 제17조 제4항). 또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하여 가명정보를 결합하도록 하고 안전조치의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또한 가명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 경우에는 즉시 처리 중단을 하고 회수·과기해야하는 금지의무를 부과하고(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이의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 정부에서는 2016년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비식별조치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 12개의 시민단체들이 20개의 기업과 4개의 비식별전문기관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정보의 활용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검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법률의 착오로 보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로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도 목적의 제한, 결합의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제재로 인하여 기대한 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12] 데이터 활용은 주요 에너지에 비견될 만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미래에는 그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보수적

이고 폐쇄적인 조치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 보다는 처리 기준의 확립과 지속적인 보안 기술 개발의 지원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1.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격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기능들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였으며(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였다[13]. 이로서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를 관할하는 독립기구인 유럽정보보호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갖추게 되어 글로벌 수준에 조금 더 가까이 갖추게 되었다고 판단된다[7].

2.1.5 유사·중복 규정의 정비

중래의 개인정보보호법령들이 중복 규정되어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특별법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필요한 국외 제 이전,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하였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30조 개정 및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 신설).

2.1.6 검토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으로서 재정비가 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격상

된 것의 의미가 가장 크다. 그 간 EU로부터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의 채택을 받지 못한 데에는 우리나라에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EU가 상대국가의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에 '적정성'을 인정하는 제도로 이 결정을 받으면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EU로부터 국내로 개인정보를 이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러 비판과 우려가 존재한다. 우선 개정법의 시행입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한 취지와 맞지 않고,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칙에서 법률의 시행입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12]. 또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목적 중 '과학적 연구'를 인정하는데 이는 모호한 개념 정의로서 포괄적으로 해석될 경우 가명정보의 오·남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14]. 또한 '가명정보'의 경우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6]. 하지만 하나의 오점도 없는 완전 처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가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시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처리 수준에 맞는 인증기준을 수립하여 그에 맞게 처리하였다면 안전한 조치로 인정하여 데이터 활용 산업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또한 시행입법과 관련하여서는 독립 기구로서의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입법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위임을 하는 것보다는 추후 개정부터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1 개정의 필요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법률 체계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다수 감독기구의 존재로 인한 혼란과 중복규제로 인한 부담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였다[9].

2.2.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의 삭제

법률 제16930호 개정 법률에서는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조항(법 제2조 제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중 개인정보 보호의 관련 내용(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6의2),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동의에 관한 조항(법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조항(법 제23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조항(법 제24조),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에 관한 규정(법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규정(법 제25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제26조),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6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법 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법 제27조의2),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법 제27조의3),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법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9조),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법 제29조의2), 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조항(법 제30조),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법 제30조의2), 법정대리인의 권리(법 제31조), 손해배상(법 제32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법 제32조의2), 손해배상의 보장(법 제32조의3),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법 제32조의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법 제47조의3),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63조), 과징금의 부과 등(법 제64조의3),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법 제67조), 고발규정(법 제69조의2)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대거 삭제되었다.

2.2.3 검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중복 규정을 대거 삭제하였다는 것이

다. 그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중복 규정이 혼재하여 수범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되었다.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1 개정의 필요성

금융분야는 그 산업의 특성상 금융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4]. 이에 따라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4].

2.3.2 빅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정보이며,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것으로(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내지 17호) 제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익명처리를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범위와 의무 사항 등을 마련하였다(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또한 가명처리와 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규정하여 분리 보관, 삭제 의무 부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러한 절차에 의한 익명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하고 있어(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 범위를 한정지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통계작성(시장 조사 등 상업목적의 통계작성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가능범위 중 상업목적의 통계,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금융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를 산출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3.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범집행 기능 강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를 “상거래기업 및 법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자료제출요구(개정법 제45조의3 제1항)·검사권(개정법 제45조의3 제2항)·출입권(개정법 제45조의3 제2항)·시정조치(개정법 제38조의 제5항 내지 제6항, 제39조의4), 과징금(개정법 제42조의2 제1항) 및 과태료(개정법 제52조의 제6항)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권한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부여한 것으로서,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효율화하도록 한 것이다[4].

2.3.4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중복·유사 조항 정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일반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금융분야의 특별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유사·중복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현행 법 제16조 등)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비하여(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효율화하였다[4].

2.3.5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내실화

우리나라의 동의 제도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용자가 그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이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 제도의 문제점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의 내용 중 동의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 수단 등을 활용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지 내용 중 요약 정보만 전달할 수 있고, 신용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지 내용 전부를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또한 신용정보주체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위험, 이익 혹은 혜택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고 신용정보주체는 그 등급에 따라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이러한 내용은 그 동안 너무 방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읽지도 않은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다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활용등급제도처럼 정보활용 동의등급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동의한 내용에 대한 안전도와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3.6 금융분야에 적극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여(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제5항) 정보이동권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이 권리를 통하여 데이터 이동이 보다 활발해져 관련 산업의 발

전이 예상된다. 정보이동권은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 받거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직접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시대의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권리이다.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자동화평가 결과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하였다(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2.3.7 검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은 금융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 이번 데이터 3법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개정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동의 제도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기하고, 정보이동권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개정법에 대한 비판점을 살펴보면 우선 개념 규정에 관한 혼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서는 “신용정보주체”를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개인 신용정보”라는 개념을 별도로 두어 불일치하는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12].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상업 목적의 통계 작성과 산업 연구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비금융권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복규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도 있다[1].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중 가장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추후 개인 정보 보호법제의 개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보이동권은 데이터 활용의 주체가 정보처리자에서 이용자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권리는 추후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

on Regulation; 이하 ‘GDPR’)과 같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정보이동은 글로벌 IT기업의 독주를 막고 다양한 기업으로 정보를 이동시켜 독과점 형태인 현재의 생태계 구조를 분산시킬 수도 있으며 마이데이터(MyData)산업의 경우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5]. 금융 분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데이터의 축적이 쉽고, 활용 가능성이 더 높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우선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여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산업을 선도해볼 것을 기대해본다.

3. 추후 과제

한 개인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휴대폰의 데이터 기록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생활 대부분이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다. 금융, 일정, 메시지, 일기, 쇼핑, 위치, 검색 기록 등이 모두 데이터화 되어 저장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데이터는 원유(oil)에 비교될 정도로 자원이 되고 있는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지속적인 개발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이제 정보의 활용을 위한 서막을 알리고 있지만, 모든 산업의 발전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에 주객전도(主客顛倒)되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러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안전조치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과 함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술개발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구로 격상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시대적 책임을 가지고 글로벌 수준의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보는 내용으로 추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3.1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자신이 몇 년 전에 인터넷에 게재한 글에 대해 그 게시를 후회하고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데이터가 계속 활용되는 경우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잇는 방법을 잊게 된 모순을 갖게 되었다[22]. ‘프라이버시(privacy)’ 분야의 법률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발전해 왔다[23]. 인터넷 환경은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하지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프로필이 공개된 상태인, 즉 익명이 아닌 상태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16].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존중받을만하지만 어느 한 편으로 현대인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 과민반응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17]. 프라이버시는 전통적으로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인정되었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권리(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라는 의미로 이해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GDPR에서는 잊힐 권리, 삭제권, 열람권, 정정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삭제권 또는 정정권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의 목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열람권의 청구, 삭제 청구에 대한 방식이 자율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그 처리 방식이나 제공되는 파일의 형식도 자율의 형식이다. 그 파일의 형식이나 청구 방법이 일원화 될 필요는 없지만 보호 위원회에서는 열람권의 경우 표준 형식을 몇 가지 정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 협조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제공되는 파일이 이용자가 다루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 등의 경우에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데이터

에 대한 접근과 활용,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열람 청구나 삭제 청구 방식은 현재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한 접근과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자에게 일차적으로 권리들을 청구한 후 그 처리가 지연 혹은 거절되었을 때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이다.

3.2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기업의 입장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명정보의 활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데이터활용산업 개발의 물꼬는 일단 트였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중요하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비식별처리에 관한 인증기준이 현재 시점의 기술에 맞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안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과 인증기준 등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 데이터 3법의 취지를 살려 합리적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그 범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15]. 기업이나 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면 데이터 활용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주의의무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거나 법적 책임을 고의·중과실의 경우와 경과실로 구별하여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15].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사례별 검토와 합리성 판단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사례를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보처리자 등의 수범자가 안전한 법 테두리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16]. 또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케이스에 대한 적극적 예방 조치와 대처 수단에 대하여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가이드라인에 담아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6].

3.3 독립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기구로 격상되었다. 그간 EU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부재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유럽연합은 공공과 민간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단일 기관으로 일원화된 집행체계를 갖추고 있고, 일본도 2015년 개정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집행체계를 일원화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였고 이제 우리도 독립 기구를 갖추게 된 것이다[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데이터 활용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조직을 잘 갖추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배치가 필요하다[16]. 또한 위원회의 유권 해석 내용 등에 대하여 각 계에서는 계속 주시할 것이 예상된다[1].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하여 일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시행입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독립성의 보장은 정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9, 20]. 따라서 보호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체계를 갖춘 이후에는 추후 개정법을 통하여 보호위원회의 규칙에서 시행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 론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의 시행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찬·반의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 그 개정안은 통과되어 2020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며,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경쟁과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하지만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는 보안 기술에 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 동안 중복 규제로 인하여 수법자의 혼란을 가져왔던 개인정보 보호 법령들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격상되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이동권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도입됨에 따라서 마이데이터산업이 출범하는 등 데이터 경제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하여 가명정보에 대하여 여전히 개인의 식별성이 여전히 존재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과학적 연구’ 등 여러 개념들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산업 연구에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면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가명 정보의 활용이 법률화되었지만 아직 목적·결합 제한과 형사제재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안전한 가명처리와 익명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현재의 수준에서 적절한 처리를 위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기업의 처리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해소시켜주어 원활하게 데이터 활용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전문 인력의 확보와 예산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강태욱, “데이터 3법 통과…의료·AI 등 산업 탄력 전망”, KISO 저널 (38), pp. 25-29, 2020.3.
- [2]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2015 NAVER Privacy White Paper, pp. 78-148, 2015.
- [3] 김민호, “개인정보의 의미”, 성균관법학, 제28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pp. 1-22, 2016.12.
- [4] 김병욱 의원 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1.
- [5] 김서안, 이인호,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중앙법학, 제21집 제4호, 중앙법학회, pp. 270-308, 2019.12.
- [6] 김윤정,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데이터 3법’, 월간 한국노동총 동권 558호, pp. 28-29, 2020.1.
- [7] 김일환, 홍석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집행 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4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pp. 1-27, 2012.12.
- [8] 김현경,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 미국헌법연구 제25권 2호, pp. 135-164, 2014.8.
- [9] 노용래 의원 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1.
- [10] 배영임, 신혜리, ‘데이터3법, 데이터경제의 시작’,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pp. 1-26, 2020.2.
- [11] 이인호 외, ‘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12.
- [12] 이인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을 위한 해결 현안들 토론문 -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23회 특집세미나 자료집, pp. 7-22, 2020.2.
- [13] 인재근 의원 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11.
- [14] 임상빈, ‘ICT 기술변화에 따른 데이터 3법 개정과 지방세 정보화 및 납세편의 제도 발전 과제’, 지방세포럼 제49호, pp. 52-68, 2020.1.
- [15] 전승재·주문호·권현영, “개인정보 비식별 조

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pp. 259-290, 2016.12.

- [16] 최경진, ‘데이터 3법 통과에 부처: 기대와 우려, 그리고 향후 과제’, KEF 매거진 vol.66, pp. 6-7, 2020.02.
- [17] Andrew T. Kenyon and Megan Richardson, ‘New Dimensions in Privacy Law’, cambridge, 2006.
- [18] C. Nicoll, J.E.J. Prins, M.J.M. van Dellen, ‘Digital Anonymity and The Law’, T·M·C, Asser Press, 2003.
- [19] CJEU, C-518/07, European Commission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10.
- [20] CJEU, C-614/10, European Commission v. Republic of Austria, 2012.
- [21] Claudia Rast et al., ‘Recent trends in provacy and data security’, ASPATORE, 2013.
- [22] Serge Gutwirth et al., ‘European Data Protection: In Good Health?’, Springer, 2012.
- [23] Tobias K. Buckner, Bertram L. Knowles, ‘Privacy-Management, Legal Issues and Security Aspects’, Nova, 2012.

[저자 소개]



김 서 안 (Seo-An Kim)

2017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19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수료

email : vizlady@cau.ac.kr